

대법원 2024. 8. 29 선고 2024다236846 판결 [부당이득금반환 및 손해배상]

재판경과

대법원 2024. 8. 29 선고 2024다236846 판결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4. 4. 4 선고 2023나38020 판결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3. 6. 22 선고 2022가소121225 판결

전문

원고, 상고인 A

피고, 피상고인 B

판결 선고 2024. 8. 29.

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. 4. 4. 선고 2023나38020 판결

주문

상고를 기각한다.

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이 유

상고이유를 판단한다.

이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,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에 정한 소액사건이므로,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 호에 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상고할 수 있다. 그런데 원고가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내용은 위 각 호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,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.

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,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,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대법관 노태악, 대법관 서경환, 주 심 대법관 신숙희, 대법관 노경필